

# 부패영향평가 운영세칙

감사실 청렴기획부

제정 2017.10.31. 세칙 제117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규정에 대하여 「감사규정」 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규정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체제를 말한다.
2. “원안동의”라 함은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한다.
3. “개선권고”라 함은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한다.
4. “소관부서”라 함은 「직제규정」에 따라 해당 제규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평가부서”라 함은 「직제규정」에 따라 윤리경영 및 청렴도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평가담당자”라 함은 평가부서에서 평가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를 말

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제규정의 제·개정안
2. 현행 제규정

**제4조(평가요청)** ① 제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규정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상임감사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부패영향평가를 「감사규정」 제4조제4항에 따른 일상감사 절차 내 포함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규정의 제·개정 여부와 관련 없이 현행 제규정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상임감사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요구)** ① 상임감사는 제4조에 따라 요청 받은 제규정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준)** ① 부패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별 검토 요령은 별표와 같다.

② 상임감사는 개정안의 경우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제규정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③ 상임감사는 제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

하면서 제규정의 제·개정이 적법 타당한지를 함께 검토하여 정책의 행정낭비 또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기한)** 상임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요청일로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한 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구두 또는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 통보)** ① 상임감사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원안동의 또는 개선권고의 의견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감사가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세부평가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소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상임감사가 통보한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 ① 상임감사는 제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상임감사는 제규정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상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거나 부패사건 등 조사과정에서 제규정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요청)** 상임감사는 제규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인 개선이 곤란한 경우
2. 전문적 사항으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3. 제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

**제12조(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상임감사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보칙)**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감사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세칙 제117호, 2017.10.31.>

이 세칙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패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별 검토 요령(제6조 관련)

평가기준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별지 제1호서식]

<b>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b>			
법령명	평가대상 제규정과 관련한 상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을 기재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형 식	정관, 규정, 세칙, 지침 등		
제규정명		평가대상 제규정의 명칭 기재	
부서	소관 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 위·성명	
	평가 부서	부서명	감사실
		담당자 직 위·성명	
제·개정 일정(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 부서	
		협 의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완료 예정일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 절차	임직원 의견조회 및 홈페이지 사전예고 실시 (20 . . . ~ 20 . . .)		
별도 붙임자료	1. 제·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별지 제2호서식]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제규정명			
구분	제정	개정	현행
소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 위·성명
평가부서	감사실 ○○부		담당자 직 위·성명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일	20 . . . .		
관련 조문		부패영향평가 결과	
○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세부평가서(별도 첨부)	
○ 문제점이 없는 경우		○ 원안 동의	

[별지 제3호서식]

# 세 부 평 가 서

■ 제규정명:

평가대상 조문

평가항목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별지 제4호서식]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조치결과 통보서

제규정명			
구분	제정	개정	현행
소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위·성명
평가담당	감사실 ○○부		담당자 직위·성명
개선권고안 조치결과 통보일	20 . . .		
관련 조문		조치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어 개선권고된 해당조항 기재		개선(안) 수용 여부 및 반영 결과 기재	